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성숙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97호, '26.6.3. 시행)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,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1항)
- 나.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2항)
- 다. 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, 목적,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3항)
- 라.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4항)
- 마.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('25.1.21)으로 공제사유인 “폐업 등”을

“폐업 또는 재난 등”으로 확대한 바,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(안 제37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폐업 등”을 “폐업 또는 재난 등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5(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)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)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공문을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

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을 통해 중앙회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③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

2.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

3.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

④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대상자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“ <u>폐업 등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	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 ①----- --- <u>폐업 또는 재난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38조의5(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)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)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공문을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중앙회

와 협의된 방식을 통해 중앙회
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③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
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
사실을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
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
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
2.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
3.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

④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
따라 중앙회로부터 전화번호 제
공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
는 대상자의 공제금 지급에 관
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
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
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
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
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
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59